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수소경제 이행촉진을 위한 사업 범위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신설)
 - 수소 학술활동, 이용·보급 관리기관, 금융지원 등 조성된 사업비 활용사업 범위를 규정
- 나. 출연금 지급방법 및 관리체계 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안제16조의4 신설)
 - 출연금 분할지급 원칙, 용도 제한, 별도 계정관리 및 보고·환수 등

관리체계를 규정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보급 촉진 및 보험·공제 기준 규정 신설(안 제34조의18, 안 제34조의19 신설)

- 설비 활용 확대 협조요청, 보험 가입 기준 및 공제 가입요건을 규정

라.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범위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0 신설)

- 국제표준 관련 지원 범위를 규정

마. 공용화 품목 지정 절차 신설(안 제34조의21 신설)

- 공용화 품목 지정절차와 중소기업 중심의 용자 지원비율을 규정

바. 보급사업 추진체계 신설(안 제34조의22 신설)

- 보급사업 실시기관 선정,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사. 수소에너지 공제조합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3, 안 제34조의24 신설)

- 공제규정 필수사항 및 사후관리 대상·주기 기준을 규정

아. 보급사업 위임 및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기관 위탁업무 관한 규정 정비(안 제57조 개정)

-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 위임 및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기관 위탁업무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및 제34조의18부터 제34조의2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구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7조의2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보급 관리기관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19(보험·공제 가입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 법 제25조의11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유효기간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

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5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제34조의2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13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

의 개발, 제조 및 수요·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
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
트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
센트

제34조의22(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
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1.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보급 관리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
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23(공제규정) ① 법 제2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및 공제료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의24(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19제3항에 수소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2. 법 제25조의12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3. 법 제25조의13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자목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2)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⑤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

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⑧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⑨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사업 성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별표 1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별표 3 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⑪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⑫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이하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⑭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⑮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⑯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이하 이 항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소”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제1호”로 한다.

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⑲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제40조제4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

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제1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

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1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㉑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의 대상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㉒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별표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소발전사업

㉓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
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17조제4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㉖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8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관련
사업

㉗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보급사업,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한다.

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㉚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

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㉓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조의4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

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
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1)부터 3)까지의 정보

1) 설비용량

2) 전력거래량

3)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및 금액(재생에너지의 경우
만 해당한다)

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7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
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5조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2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7호 및 제18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0.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별표에 1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㉓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으로 한다.

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④②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8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④③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0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④④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로 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 하는 사업) 법 제7조의2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u> <u>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u> <u>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보급 관리기관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u> <u>3.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u>		
<u><신 설></u>		<u>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u>		

<신 설>

<신 설>

리) ① 출연금은 법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19(보험·공제 가입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
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
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 법 제25조의11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법 제25조의10제1
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유효기
간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

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
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
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5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신 설>

제34조의2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제25조의13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제34조의22(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제2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 설>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1.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 · 보급 관리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23(공제규정) ① 법 제2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신 설>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 ⑥ (생략)

<신 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및 공제료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의24(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25조의19 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19제3항에 수소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

<신 설>

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2. 법 제25조의12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 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3. 법 제25조의13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